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0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주식회사 홍지(대표 김태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605번길 175
법 인 명	東部建設 株式會社 (대표 허상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법 인 명	주식회사 이산 (대표 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2. 기술명 : 강결강재와 매입철근을 활용하여 PSC 박스형 거더나 하부벽체를 일체화시키는 합성형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박스형 프리캐스트 PSC 거더를 하부벽체 상면에 거치하여 일체화시킨 라멘교량으로 기존의 RC 라멘교와 비교하여 낮은 형고와 긴 경간장을 바탕으로 통수 단면적을 증가시켜 홍수시에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동바리 설치를 생략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재해복구에 탁월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강결강재가 설치된 PSC 박스형 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의 벽체 상면에 거치하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벽체, 슬래브를 일체화시킨 합성형 라멘교 시공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